

外部監査對象企業의 監査意見 區別에 관한 研究*

南 相 午

《目 次》	
I. 序 論	3. 監査意見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問題의 提起와 研究目的	4. 限定・不適當・意見拒絕의 相互比較
2. 研究方法	5. 監査報告書上에 나타난 監査意見의 現況과 分析
3. 예상되는 效果와 活用方案	
II. 本 論	III. 結論과 提案
1. 監査意見의 意義와 種類	
2. 監査意見의 분류기준	

I. 序 論

1. 問題의 제기와 研究目的

현재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외부감사(회계감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총자산 40억원이상인 기업은 의무적으로 공인회계사에 의한 외부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다. 1989년도의 경우 외부감사를 받은 기업은 4,787개 회사로 이들 회사에는 상장법인은 물론 기업공개 또는 사채발행 예정의 등록법인, 비상장 및 비등록 법인의 회사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1989년도에 있어서 외부감사를 받은 기업의 경우 監査意見은 적정의견이 3,853개사(80.5%), 한정적의견이 894개사(18.7%), 부적정의견이 15개사(0.3%), 의견거절이 25개사(0.5%)에 달하고 있다. 이로써 대부분의 회사가 적정의견을 받고 있고 나쁜 감사의견이라고 할 수 있는 부적정의견, 의견거절을 받은 회사의 수는 극히 적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는 미국 등 회계선진국에 비하여 기업의 회계처리수준이 낮고 외부감사인의 감사수준도 낮다고 생각되고 있다. 또 우리나라 기업에는 불확실성에 관련한 계속기업의 문제, 파산, 정리대상기업, 부실채권, 우발채무 등의 문제가 많다. 그밖에 監査意見의 구별이 명료하지 않고 자유경쟁의 감사수임계약에 의한 감사풍토로 인하여 감사의견

筆者 : 서울대학교 교수

* 이 연구는 취약장학 재단으로부터 1991년도 연구 재정지원을 받아 수행된 것이다.

이 후하게 표명되는 경향도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우리나라 기업 특히 외부감사대상기업의 외부감사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감사의견의 구별에 대한 실태분석을 행하고 감사의견의 구별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과거 2년도에 대한 외부감사대상기업의 감사보고서를 입수하여 나쁜 감사의견인 한정의견, 부적정의견, 의견거절을 받은 기업의 자료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감사의견 구별의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研究方法

이 연구의 연구방법으로는 선행연구에 대한 문헌연구와 함께 과거 2년도의 외부감사대상기업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입수하여 실태분석을 수행하는 것이다.

실태분석을 위해서는 이 논문의 작성시점에 가장 가까운 기간인 1989년도와 1990년도의 감사보고서를 입수하여야 하는데, 이들 자료는 증권감독원에만 비치되어 있다. 분석방법으로 상장법인, 등록법인, 기타 외감법대상법인으로서 나쁜 감사의견인 부적정의견과 의견거절을 받은 회사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이들 의견과 적정의견, 한정의견을 비교함으로써 감사의견의 구별을 검토하고 구별의 개선안을 제시하기로 한다.

한편 문헌연구와 실태분석을 거친 후 외국의 감사의견과 비교하여 우리나라 감사의견과 외국의 감사의견의 차이점을 질적인 관점에서 비교분석하기로 한다.

3. 예상되는 效果와 活用方案

본 논문에서 감사의견의 구별에 대한 2년간의 실제자료를 분석 검토함으로써 다음의 예상되는 효과와 활용방안이 있을 수 있다.

첫째, 증권관리위원회에서 제정하는 기업회계기준과 회계감사기준의 개정에 그 내용을 반영시킬 수 있다. 지금까지 이들 규정은 심층적 연구와 실제자료에 의한 분석없이 토론에 의해서만 제정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 연구에 의하여 우발채무의 표시, 감사의견의 구별 등의 관련된 규정에 개선안을 반영시킬 수 있다.

둘째, 기업의 회계실무와 공인회계사의 감사실무가 개선될 수 있다. 지금까지 감사의견의 구별이 분명하지 않음으로써 기업의 회계실무는 분식결산 등 질적 수준이 저하되기도 하였고, 공인회계사의 감사실무도 낮은 수준에 있어 감사의견에 대한 존중심도 없는 편이었다. 이 연구로 이상의 문제점이 완전히 해결되는 것은 아니나 어느 정도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이 연구의 결과가 신문에 게재되거나 논문집에 수록될 경우 감사의견의 구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우리나라 외부감사의 문제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이다. 지금까지

외부감사에 의한 감사결과가 외부로 노출된 적이 없었는데, 그 결과가 알려지면 사회적으로도 충격이 있을 수 있고, 외부감사의 문제점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II. 本 論

1. 監査意見의 意義와 種類

1.1. 監査意見의 意義

감사인은 감사조서를 검토한 후 감사보고서에 표시하여야 할 최종적인 의견을 형성하기 위해 각 감사조서의 결과를 통합해야 한다. 또한 재무제표가 기업회계기준에 의거하여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에 관한 의견을 표명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수집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의견형성에 충분한 증거가 수집되었다고 판단되면 감사인은 이를 기초로 하여, 표명하여야 할 감사의견의 종류를 결정하게 된다. 의견이 결정되면 감사인은 최종적으로 이러한 특정 결론이 과연 전체적인 합리성(overall reasonableness)을 갖고 있으며, 감사조서에 기록된 증거들이 특정의견을 뒷받침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평가한다. 주로 전년도 감사의견과의 형평성, 동 산업의 회계처리방법 및 감사의견의 일반유형, 의뢰회사의 영업설명서, 재무분석지표와 추세분석자료 등을 통하여 특정 감사의견의 합리성을 검토한다. 이 때는 분석적 검토방법이 주로 이용된다.

최종평가단계에서 감사인이 행하는 업무를 요약하여 보면 다음을 들 수 있다.

- 수집된 증거가 충분한지에 대해 검토한다.
- 재무제표의 공시사항에 대해 검토한다.
- 재무확인서를 받는다.
- 현장업무 책임감사인이 감사조서를 검토한다.
- 오류를 평가하여 감사의견의 종류를 결정한다.
- 영업보고서에 포함된 영업설명서 및 기타의 자료를 읽는다.
- 감사업무에 참여하지 않은 독립적인 심리회계사가 전반감사업무 및 특정감사의견을 검토한다.

이와 같은 감사의견은 감사보고서(auditor's report)를 통해 이루어지며 또한 감사의견은 감사위험을 수반하므로 보고서상에는 감사인이 부담할 수 있는 책임의 범위와 한계를 표시하여 주고 있다. 즉 감사보고서상 나타나는 감사인의 책임한계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 방법

으로 암시되어 있다.

첫째로, 회계감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회계감사기준을 준수하였다는 표현은 감사인이 공인회계사회에서 제정한 감사기준과 감사실시 및 보고준칙에 규정되어 있는 감사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였음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절차들은 일반적으로 정밀감사가 아닌 시사에 의하여 수행되고 있음이 인식되고 있다. 이는 회계감사의 목적이 재무제표작성과정에서 경영자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이나 오류의 적발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암시하여 주는 것으로 감사인은 보고서 제출 후에 부정이나 오류를 적발하지 못한 책임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는 근거를 갖게 되는 것이다.

둘째로, 감사인은 재무제표의 적정성을 보증(certify)하거나, 감정(appraise)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전문가로서의 의견(opinion)을 표명하는 것임을 보고서상에 명시하고 있다. 이는 1930년대 이전의 감사보고서들이 “우리는…… 정확하게 계상하고 있음을 보증합니다.”(We certify that... correctly states...)와 같이 표현함으로써 감사보고서의 독자들로 하여금 감사결과를 과신케 하고 결과적으로 감사인의 책임한계가 불필요하게 확장되었던 경험이 토대가 되어 감사보고서가 회계전문가로서의 감사인의 의견일 뿐 재무제표가 완전하다는 의미의 보증행위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다.

현행과 같은 감사보고서의 형식은 1950년대 이후 미국에서 사용되기 시작하였으며 우리나라 회계감사기준에서도 그 형식에 약간의 수정을 가한 표준문안을 채택하여 커다란 변동 없이 사용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보고서형식이 감사인과 보고서 이용자간에 재무제표의 적정성여부에 대한 충분한 의사전달수단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오래 전부터 받아왔으며, 결국 미국공인회계사회는 1988년 4월 감사기준서 제58호를 발표하여 그 내용을 전면 개정하기에 이르렀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현행보고서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피감사회사에 대한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주요재무정보를 특기사항으로 추가하는 형식의 개선안이 확정되었다.

1.2. 監査意見의 種類

1.2.1. 監査報告書의 構成內容

개정된 회계감사기준에 따른 감사보고서와 미국의 감사보고서의 내용과 양식을 중심으로 비교·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1989년 1월부터 시행된 미국 감사보고서의 표준양식에서는 전통적으로 사용되던 범위문단과 의견문단 이외에 감사의 성격과 감사인의 책임한계를 명

시한 책임문단을 추가하여 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경영자의 책임과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이를 감사한 감사인의 책임을 구분하여 범위문단 다음에 기술하고 있다.

1개년도를 감사한 경우 사용되는 표준형식의 적정의견 보고서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¹⁾

〈표 1〉 적정의견 감사보고서

Independent Auditor's Report

We have audited the accompanying balance sheet of X Company as of December 31, 19××, and the related statements of income, retained earnings, and cash flows for the year then ended. These financial statements are the responsibility of the company's management. Our responsibility is to express an opinion on these financial statements based on our audit.

We conducted our audit in accordance with generally accepted auditing standards. Those standards require that we plan and perform the audit to obtain reasonable assurance about whether the financial statements are free of material misstatement. Our audit includes examining, on a test basis, evidences supporting the amounts and disclosures in the financial statements. An audit also includes assessing the accounting principles used and significant estimates made by management, as well as evaluating the overall financial statement presentation. We believe that our audit provides a reasonable basis for our opinion

In our opinion, the financial statements referred to above present fairly, in all material respects, the financial position of X Company as of [at] December 31, 19××, and the results of its operations and its cash flows for the year then ended in conformity with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Signature]

[Date]

미국 감사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은 10가지 중요한 사항들이 각 문단별로 포함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범위문단]

- ① 독립감사인의 보고서란 제목
- ② 감사대상 재무제표의 종류
- ③ 경영자의 재무제표 작성책임과 감사인의 의견표명 책임의 명시

[책임문단]

- ④ 감사가 회계감사기준에 준거하였다는 기술
- ⑤ 회계감사기준이 재무제표상 중요한 왜곡표시(materially misstated)가 없다는 데 대한 합리적 확신을 얻기 위하여 감사를 계획하고 실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는 기술
- ⑥ 회계감사가 i) 시사방법에 의해서 재무제표에 관련된 증거를 조사하고, ii) 적용된 회계원칙이나 추경이 합리적인가를 평가하고, iii) 전반적인 재무제표 공시방법을 평가하는

(1) Statement on Auditing Standards #58, Report on Audited Financial Statements, par. 8 Apr. 1988, AICPA.

절차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기술

⑦ 감사안에 의해 수행된 감사가 의견형성의 합리적 기초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확인

[의견문단]

⑧ 재무제표가 기업회계원칙(GAAP)에 따라 재무상태와 경영성과 등을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감사인의 의견

⑨ 감사인의 성명

⑩ 보고서 일자 등

다음으로 한국의 경우를 살펴보자.

개정이 확정되기 전 감사보고서의 경우 형식이 너무 단문화되어 있어 이용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주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러한 비판은 결국 회계감사에 대한 사회적 공신력을 저하시키게 되므로 1990년부터 시행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는 회계감사기준의 재정권한을 종래의 공인회계사회로부터 증권관리위원회로 이관하여 투자자 보호적 측면에서 감사보고서의 신뢰성을 제고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 새로운 보고서의 표준형식이 확정되었다.

개정된 회계감사기준에 의하면 감사보고서는 본문과 특기사항으로 구분되고 본문은 감사범위문단, 감사의견문단 및 별도문단으로 구성되며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중간문단을 추가하고 특기사항에는 감사의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나, 감사보고서 이용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참고가 될 사항들을 기술하도록 하고 있다.

[범위문단]

감사범위문단에는 감사대상 재무제표, 경영자와 감사인의 책임한계, 감사가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수행되었는가의 여부를 명시하여야 한다.

[의견문단]

감사의견문단에는 재무제표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 등에 대한 감사인의 의견을 기술하도록 하고 있다.

[중간문단과 별도문단]

감사인이 적정의견을 표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에서 설명한 범위문단과 의견문단 사이에 중간문단을 설정하고 적정의견이 되지 못하는 원인과 재무제표에 미치는 금액상의 영향을 간결명료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별도문단에는 전년도 재무제표가 비교형식으로 표시되었을 때 전년도 감사인의 명칭, 감

사보고서일자 및 감사의견의 종류를 기재하여, 의견문단 다음에 나타내도록 하고 있다.

1.2.2. 適正意見

재무제표를 감사한 후 감사인이 표명하는 의견은 다음의 네가지 종류로 정형화되어 있다.

- ① 적정의견 (standard or unqualified opinion)
- ② 한정적의견 (qualified opinion)
- ③ 부적정의견 (adverse opinion)
- ④ 무의견 또는 의견거절 (disclaimer of opinion)

감사인은 감사보고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따라서 중요성의 기준을 적절히 적용하여 이중 한가지 의견을 선택하여야 하는데, 먼저 적정의견 감사보고서에 대해 살펴보면 적정의견 감사보고서는 표준감사보고서 (standard report)라고도 하며, 그 보고서 작성은 감사인이 ① 감사범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② 회계감사기준에 준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③ 재무제표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작성한다.

이 표준감사보고서는 「증권거래법」이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감사여하에 관계없이 표준형식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감사대상회사와 회계년도 및 재무제표의 종류만 변동함으로써 적정의견 감사보고서의 의미를 보고서 이용자들에게 명백하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적정의견이 표명될 수 있는 조건으로서 계속성 원칙의 준수가 있는데 회계년도중에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회계처리 방법의 변경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변경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변경된 회계처리 방법이 당기 이후에 적용된 경우에는 이를 기업회계기준에 일치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적정의견을 표명한다.

다만 이 때에 변경의 결과가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회계처리방법의 변경으로 인한 재무제표에 대한 영향과 변경의 정당성 및 내용을 의견문단 다음에 특기사항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기업회계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변경으로 인정되어 적정의견이 표명되는 경우를 요약해보면 다음 ①~⑥과 같다.

①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회계처리방법이 변경되고 변경된 회계처리방법이 변경년도부터 적용된 경우

② 기업회계기준에 위배되는 회계처리방법에서 기업회계기준에 일치되는 방법으로 변경하고 그 변경된 회계처리방법을 소급 적용한 경우

③ 대손상각, 자산평가, 고정자산의 내용년수와 잔존가액 등과 같은 회계추정에 변경이

있는 경우

- ④ 과년도 회계처리상의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 ⑤ 재무제표상의 과목분류방법이 타당한 이유에 의하여 변경된 경우
- ⑥ 전년도 재무제표상의 과목분류를 금년도와 비교복적으로 일치시키기 위하여 재분류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경우 감사인은 다음 사항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 적정의견을 표명하도록 회계감사준칙에서 규정하고 있다.

- ① 독립성이 유지될 것
- ② 감사범위의 제한이 없을 것
- ③ 재무제표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을 것

1.2.3. 限定意見

한정의견 감사보고서는 ① 재무제표작성에 적용된 회계처리방법과 재무제표 표시방법 중 일부가 기업회계기준에 위배되어 있거나, ② 감사의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감사범위의 제한이 있는 경우에 작성된다.

한정의견 또는 제외식 한정의견(except for opinion)은 회계처리방법과 재무제표 표시방법의 일부가 기업회계기준에 위배되어 있으므로 그 “일부를 제외하고는”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 이익잉여금 처분내용 및 재무상태의 변동을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의미를 전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에 작성된다.

- (1) 회계처리방법과 재무제표 표시방법이 기업회계기준에 위배되는 경우, 즉
 - ① 재무제표작성에 계속 적용되는 회계처리방법 또는 당기에 처음으로 적용되는 회계처리방법이 기업회계기준에 위배되는 경우
 - ② 기업회계기준에 일치되는 회계처리방법에서 기업회계기준에 위배되는 방법으로 변경한 경우
 - ③ 기업회계기준에 일치되는 회계처리방법에서 기업회계기준에 일치되는 방법으로 변경하였으나 그 변경의 사유가 정당하지 아니한 경우
 - ④ 회계처리방법의 변경이 기업회계기준에 일치하고 그 변경의 사유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나 그 변경된 회계처리 방법을 과년도로 소급 적용한 경우
 - ⑤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및 재무상태 변동표 중 어느 하나라도 감사에서 제외되어 있는 경우
 - ⑥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주기 및 주석사항 중 재무제표에 표시되지 아니한 것이 있는

경우

(2)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감사범위의 제한이 있는 경우, 즉 회사의 요구, 감사실시시기와 기간상의 제약, 회계기록의 부실, 감사증거의 입수불능 등으로 감사범위가 제한을 받았기 때문에 합리적인 증거를 확인하지 못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작성된다.

여기에서 감사범위가 제한됨으로 인해서 합리적인 증거를 얻지 못하는 경우는 감사범위 제한의 사유가 누구에 의해서 부과된 것인가를 고려해 보아야 한다. 감사계약체결이 지연되어 기말제고 실사에 입회하지 못하였다거나 회계기록의 일부가 부실하여 효과적인 감사 증거를 입수하지 못하였다든지 하는 등의 이유로 인하여 감사범위의 제한이 초래된 것이라면 그 부분을 제외한 감사의견을 표명할 수 있지만 회사에서 자료제출을 의도적으로 거부하거나 특정지역에의 접근을 제한하는 등 회사에 의하여 부과된 범위제한이 명백할 경우에 감사인은 대부분의 경우에 의견거절을 표명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전통적으로 한정 의견은 제외식 한정 의견과 조건부 한정 의견(subject to opinion)으로 구분되었으나 최근 개정된 감사기준에서는 감사의견의 종류중에서 조건부 한정 의견을 삭제하고 있다. 이는 조건부 한정 의견의 표명이 재무제표의 적정여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요구하고 있는 보고기준의 내용에도 적합하지 않을뿐 아니라 장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판단을 재무제표 이용자들에게 전가하고 있으므로 정보의 가치를 감소시킨다는 비판을 받아들여 따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감사인들은 재무제표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존재할 경우 이를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상황으로 구분하여 각각 적절한 의견을 표명하여야 한다.⁽²⁾

(1) 감사범위의 제한이 되는 불확실성

감사인 현재 불확실한 사항과 관련하여 충분한 증거자료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경영자의 보안조치 또는 접근제한조치 등에 의하여, 손실의 발생가능성을 평가하고 그 금액을 추정하는데에 충분한 증거자료의 입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감사범위의 제한이 되며, 이 경우에는 그 중요성에 따라 한정 의견 또는 의견거절을 표명한다.

(2) 회계원칙이 위반이 되는 불확실성

불확실한 사항과 관련되는 충분한 증거자료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도 경영자는 그러한 사실과 그 사실이 재무제표상에 미치는 영향을 적절히 공시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감사인은 경영자의 이러한 책임을 인식하여야 하며,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사항에 대한 경영자의 공시방법이 부적절하거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발생할 손실에 대한 감사인의 추정과 경영자의 추정이 일치하지 않아 그 손실을 재무제표에 적절히 반영하지 않은 경우에는

(2) SAS #58, par. 18-26. 회계감사기준 제29조 ①~③.

기업회계기준 위반을 이유로 하여 한정 의견 또는 부적정 의견을 표명하여야 한다.

(3) 특기사항으로 강조해 주어야 할 불확실성

불확실한 사항이 초래할 수 있는 장래의 결과나 재무제표상의 공시방법이 경영자에 의해서도 합리적으로 판단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감사인은 불확실한 사항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의견을 제한할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에 감사인은 장래에 초래될 수 있는 손실금액의 중요성과 그 발생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가능성이 상당히 높다(probable)고 인정될 경우에는 적정 의견을 표명하되 이를 특기사항에서 기술하는 형식으로 공시하여야 하며, 가능성이 희박하다(remote)고 판단될 경우에는 단순한 적정 의견을 표명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발생가능성이 있으나 높지는 않을 경우(reasonably possible)에는 예상되는 금액의 크기에 따라 별도문단에 기술할 것인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준칙에는 다음과 같이 명기하고 있다.

433. 한정 의견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다음의 예외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한정 의견을 표명한다.

① 감사범위의 제한이 있는 경우

② 회계처리방법, 회계변경 또는 재무제표의 표시방법이 기업회계기준에 위배되는 경우

1.2.4. 不適正意見

부적정 의견 감사보고서는 한정 의견에 해당하는 기업회계기준 위배사항이 재무제표에 특히 중대한 영향을 미침으로써 재무제표가 전체적으로 왜곡 표시되어 무의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작성되는 것으로서 “~이 특히 중대하므로 재무상태와 경영성과, 이익잉여금과 재무상태의 변동을 적정하지 않게 표시하고 있다.”는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작성된다.

제외적 한정 의견과 부적정 의견과의 구분은 기업회계기준 위배사항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의 중대성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감사인은 앞에서 언급한 예외사항의 질적 요소와 양적 요소를 고려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부적정 의견을 표명하는 경우에 부적정 의견의 사유가 된 사항 이외에 적정 의견을 표명할 수 없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항도 중간문단에 간결히 기재함으로써 기업의 재무제표를 올바르게 판단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또한 부적정 의견을 표명하면서 재무제표의 일부 항목이 적정하게 표시되어 있다는 부분 의견(piecemeal opinion)을 표명하여서는 안 된다.

부적정 의견은 재무제표가 표시해야 할 바를 적정히 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단호한 진술

이다. 따라서, 이는 감사인이 재무제표가 적절히 표시되어 있지 못함을 확신할만한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을 때 작성된다. 미국에서는 SAS No. 1의 문단 513.02(기타 동 SAS의 Section 500의 여러 다른 부분)에서는 감사인이 단순히 의견을 거부함으로써 부적정의견을 표명할 것을 회피할 수 없다는 것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

실무에서 부적정의견이 표명되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감사인의 의견이 표명되기 전에 부적정의견의 요인을 수정하는 것이 모든 관계인들에게 보다 바람직하나, 그러한 것은 의뢰인의 재량이다. 실제로 부적정의견 보고서는 그 재무제표의 이용자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기업회계원칙과는 다른 준거원칙에 의해 작성된 재무제표를 필요로 하며 그에 따른 결과를 이해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하고 제한된 목적을 위하여 작성된 재무제표에 국한된다. 고정 자산을 감평가액으로 표시하는 재무제표나, 거래 당사자 간에 특별한 조건이나 약정이 포함된 기업결합 등과 같은, 특수한 거래를 위해 특정한 회계원칙을 적용하기로 당사자들이 요구하고 합의한 재무제표 등도 그 예로 들 수 있다.

우리나라의 기준에는 다음과 같이 명기되어 있다.

434. 부정적의견

회계처리방법, 회계변경 또는 재무제표 표시방법이 기업회계기준에 위배되어 재무제표에 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부적정의견을 표명한다.

1.2.5 意見拒絶

의견거절 감사보고서는 감사범위제한에 해당되는 사항들이 재무제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특히 중대하거나 감사인의 독립성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에 작성되는 것으로서 감사인이 의견표명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전달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작성된다.

(1) 감사범위의 제한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하여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을 형성하지 못하여 의견표명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감사가 회계감사기준에 따라서 수행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범위문단에 기술하고 중간문단에서 그 내용을 설명한 후 의견문단에 그러한 사유로 인하여 의견표명을 거절한다는 사실을 기술하여야 한다.

(2) 불확실성

전술한 바와 같이 감사범위의 제한이 되는 불확실성이 특히 중대하므로 감사인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형성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감사인은 중간문단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의견문단에서 의견표명을 거절하여야 한다.

(3) 독립성 결여

감사인이 감사대상회사와 특정한 이해관계를 가짐으로써 당해 감사에 대한 독립성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인적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이며, 그에 의해 수행된 어떠한 감사절차도 회계감사기준에 따라서 수행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감사인은 감사의견을 표명할 수 없으며, 이 경우에는 그가 수행한 감사절차와 독립성 결여의 이유 등을 설명함으로써 감사보고서 이용자들에게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을 피하기 위하여 중간문단에서 설명을 생략하고 독립성 결여의 사유만을 간결명료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4) 의견거절사유 이외의 예외사항

의견거절을 하게 된 사유 이외에 기업회계기준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별도로 중간문단에 기술하여야 한다.

그러나 감사인은 재무제표의 전체에 대해서는 의견표명을 거절하면서 재무제표의 일부 항목은 적절하게 표시되어 있다는 부분의견(piecemeal opinion)을 표시하여서는 안되며, 또한 감사인이 수행한 감사절차를 감사보고서에 나열함으로써 감사의견의 내용을 모호하게 하여서도 안 된다.

우리나라의 회계감사준칙에는 다음과 같이 의견거절에 대해 서술되어 있다.

435 의견거절

다음의 예외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거절을 표명한다. 이 경우 그 사유만을 간결명료하게 기술한다.

- ① 독립성이 결여된 경우
- ② 감사범위의 특히 중요한 제한이 있는 경우

2. 監査意見의 分類基準

감사인은 감사보고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따라서 중요성의 기준을 적절히 적용하여 감사의견에 영향을 미치는 예외사항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이 중 한 가지 의견을 선택하게 되는데, 이 때 감사인은 다음 네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고려하여야 한다(예외사항의 내용은 3에서 설명하겠다).

- 1) 회계감사는 회계감사기준(GAAS)에 따라서 수행되었는가?
- 2)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GAAP)에 따라서 작성되었으며, 공시요구는 모두 충족되었는가?
- 3) 재무제표 작성을 위하여 채택된 회계원칙은 계속적으로 적용되었는가?
- 4) 재무제표가 특별한 불확실성에 의해서 영향받은 것은 없는가?

만일 감사인이 이러한 네 가지 의문에 모두 만족할 수 있다면 적정의견이 표명되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적절하게 의견을 수정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러나 감사대상 재무제표에 적절하게 처리되어 있지 않은 사항, 즉 예외사항이 있을 경우에 그와 관련하여 어떤 종류의 의견을 표명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그 중요도에 따라 감사인의 전문적 판단에 의하여 결정하며 예외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한 경우에는 한정 의견을 표명하고 그 영향이 특히 중요한 경우에는 부적정의견 또는 의견거절을 표명하여야 한다. 중요성의 판단기준으로는 예외사항의 질적인 요소와 양적인 요소가 고려되어야 하는데 일반적인 고려요소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질적요소

- 1) 형식보다 실질의 존중
- 2) 예외사항이 재무제표에 전반적으로 미치는 영향
- 3) 예외사항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과의 관계
- 4) 자금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 5) 예외사항의 민감도 : 예를 들면, 조건의 잠재적 위약, 특수이해관계자와의 거래, 수익성의 조작, 기타 의도적인 왜곡표시, 거래의 적법성 여부 등이 있다.
- 6) 불확실성 : 불확실성으로는 현재 및 과거의 예외사항이 미래에 미치는 영향, 자산의 가치평가 혹은 현금회수가능성, 판단상의 오류가능성 등을 들 수 있다.

(2) 양적 요소

1) 예외사항의 개별적 관계

- ① 예외사항의 금액
- ② 총매출액에 대한 정도
- ③ 매출총이익에 대한 정도
- ④ 당기순이익에 대한 정도
- ⑤ 주당이익에 미치는 정도
- ⑥ 총자산에 대한 정도
- ⑦ 총부채에 대한 정도
- ⑧ 자기자본에 대한 정도
- ⑨ 해당계정과목 총액에 대한 정도
- ⑩ 해당대분류 과목에 대한 비율

- 2) 예외사항의 총액이 손익에 미치는 정도와 영향(매출액, 관련비용총액, 당기순손익)

3) 수익성과 안전성에 대한 추세 등

감사인이 감사의견을 결정하기 위하여 채택하는 중요성 기준은 회계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3. 監査意見에 影響을 미치는 要因

감사의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을 감사인의 독립성, 감사범위 제한, 기업회계기준 위배, 불확실성으로 나누어 설명하여 보자.

3.1. 監査人의 獨立性

관련감사인 및 감사보조자 등이 회계감사기준이나 공인회계사 직업윤리규정 등에서 정하고 있는 독립성을 결여하였을 경우, 감사인은 당해 감사업무에 관여하지 않아야 하며 따라서 이는 의견거절을 표명하는 사유가 된다.

당해 감사에 참여하였을 경우, 설령 감사기준에서 정하는 모든 절차를 수행하였다 하더라도 회계감사기준에 준거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따라서 “그 수행정도에 관계없이” 감사의견을 표명할 수 없다.

감사보고서에 독립성의 결여로 인한 의견거절을 표명할 경우에는 독립성 결여의 사실만을 간략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그가 수행한 감사절차나 독립성결여의 이유 등을 설명함으로써 이용자를 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현행 준칙에서는 감사인의 독립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220. 독립성

감사인은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신적인 독립성과 외관상의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221. 정신적 독립성

(1) 감사인은 감사와 관련된 사적이해를 배제하여야 하며, 감사업무의 수행에 있어서 항상 공정불편의 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

(2) 감사인은 감사업무수행과정에서 행하여지는 감사인의 판단이 타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감사에 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3) 감사인은 경영자와 외부이해관계자의 이해가 상충하는 사항의 감사에 있어서는 외부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입장에 서야 한다.

222. 외관상 독립성

(1) 감사인은 독립성에 관한 의문을 배제하고 사회적인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외관상의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외관상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없는 상

황이므로 당해 감사에 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감사인 또는 감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회사와 다음과 같은 재무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① 회사의 주주인 경우. 다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 3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 보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미만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회사의 채권자 또는 채무자인 경우. 다만, 공인회계사 업무로 인한 채권·채무와 1억 원미만의 기타 채권·채무의 경우는 제외한다.

나. 감사인 또는 감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회사의 임원 또는 재무에 관한 업무의 책임자로 있거나 감사대상기간 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있었던 경우

다. 감사인이 회사의 사용인이거나 감사대상기간 개시일전 1년 이내에 사용인이었던 경우

라. 감사인이 회사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직무를 담당하는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직위에서 퇴직한 후 감사대상기간 개시일 현재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마. 감사인이 회사로부터 사회통념상 공정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는 경우

바. 감사인이 공정한 감사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업무로 인하여 회사로부터 보수를 받는 경우

사. 감사인과 회사간에 감사와 관련된 성공보수약정이 있거나 감사보수를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감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아. 기타 “가” 내지 “사”에 준하는 관계가 있는 경우

(2) “(1)”에서 “감사인”이라 함은 다음의 자를 말한다.

① 회계법인, 합동회계사무소 또는 감사반

② 회계법인의 사원, 합동회계사무소 및 감사반의 구성원

③ 당해 감사에 관여하는 공인회계사(보조자를 포함한다)

(3) “(1)”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의 자를 말한다.

① 배우자

② 2촌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③ 배우자의 2촌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441. 독립성 결여

감사인의 독립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감사와 관련하여 실시한 어떠한 감사절차도 기준을

준수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의견거절을 표명하여야 한다.

3.2. 감사범위의 제한

감사범위에 제한이 있었다는 사실은 감사인이 의견을 표명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증거를 수집하지 못하였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감사실시의 시기 또는 대상기간의 불합리성, 충분한 감사증거의 수집불능, 회계기록의 부실 등으로 인한 예금 및 장단기채무의 은행조 회확인불능, 재고자산실사의 입회불능, 매출채권의 직접조회불능 등의 경우이다. 물론 감사인은 이러한 이유로 감사범위의 제한이 있었다 하더라도 대체적 감사절차를 적용하여 의견표명에 필요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였거나 실무적으로 기타의 감사절차를 적용할 수 있었을 경우에는 적정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것이다.

감사범위가 제한되는 원인으로는 크게 ① 피감사회사의 사정에 의한 감사범위의 제한, ② 피감사회사나 감사인이 통제할 수 없는 불가피한 환경적 조건에 기인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1) 피감사인 사정에 의한 감사범위의 제한

피감사인의 사정에 의한 제한사항 중 가장 일반적인 것은 감사비용 등을 줄일 목적으로 피감사인의 요구에 따라 재고자산실사의 입회, 외상매출금의 조회, 중요한 지점에 대한 감사 등이 실시되지 않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의뢰인이 감사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역시 감사인의 책임도 제한하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감사범위의 제한에 따른 영향이 몇개의 거래 기록이나 계정잔액에 국한되고 금액의 중요도가 의견거절을 할 정도가 아닌 경우에는 “~을 제외하고”(except for)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한정의견을 표명하게 된다. 이 경우 감사인의 한정내용은 단순한 범위제한으로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재무제표상 영향을 미치는 관련항목을 명백하게 중간문단 및 의견문단에 언급하여야 한다. 즉 한정내용을 범위제한이라는 사실로만 간략하게 언급함으로써 재무제표이용자들의 관심사인 재무제표의 각 항목에 있을 수 있는 잠재적 오류가능성을 은폐시키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아니된다.⁽³⁾

(2) 불가피한 환경적 조건에 의한 감사범위의 제한

때때로 감사인이 당시의 상황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사절차를 불가피하게 수행할 수 없음으로써 적정의견을 표명하기 위한 합리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가장 일반적인 예로서는 감사계약이 대차대조표일 이후에 체결되는 등의 이유로 재고자산실사의 입회를 할 수 없거나 또는 장기투자자산의 장부가액에 대한 의견을 뒷받침할 만한 정

(3) P.L. Defliese, H.J. Jaenicko, J.D. Sullivan, and R.A. Gnospelius, *Montgomery's Auditing, College Version*, 10th ed. (New York, N.Y.: John Whey & Sens, 1984), p. 1022.

보가 충분히 수집될 수 없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만약 감사인이 특정 감사에서 일반적으로 적용해 오던 정규감사절차를 이용할 수 없었고 또한 만족할 만한 내체적인 감사절차도 적용할 수 없었다면 그 중요도에 따라 한정 의견 내지 의견거절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때에도 범위제한의 사실에 대하여 범위문단에서 언급한 후, 그 상세한 내용을 중간문단에서 기술한다. 감사범위 제한은 언제나 감사보고서 상에만 기술되어야 하며, 일반적인 주석사항과 같이 재무제표에 상세한 내용을 주석으로 공시하고 감사보고서에서는 단지 주석의 번호만을 언급하는 방법은 허용되지 않는다.

만약에 감사범위에 제한이 있었으나 감사인이 기타의 감사절차를 통하여 만족할 만한 감사증거를 입수했다면, 이 경우에는 별도로 감사보고서 상에 의상매출금이 조회되지 않았고, 재고자산실사에 입회하지 않았으나 기타의 감사절차를 적용하여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었다는 등의 내용을 언급할 필요는 없고 단지 그 내용을 감사조서에 기재하면 된다. 즉, 감사인은 자신의 판단하에 스스로 적절한 감사절차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따라서 한정 의견을 표명하기 위한 설명을 중간문단에 기술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기타의 사항을 감사보고서 상에 언급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감사범위의 제한이 있었을 경우에 표명되는 의견의 종류는 그 원인이 피감사인의 사정에 기인하는가 혹은 불가피한 상황에 기인하는가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다만 피감사인의 사정에 따라 감사범위가 제한되었을 경우에는 오류의 은폐가능성에 대한 감사인의 각별한 주의가 요청되는 것이며, 아울러 중요성 등의 판단 기준이 보다 엄격하게 적용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 SAS No. 2에서 제한원인을 두가지로 분류하여 별도로 설명하고 있는 이유는 감사인에 의한 의도적 범위 제한의 경우에는 오류 잠재가능성을 보다 엄격히 평가하여 필요한 경우 의견거절의 표명가능성을 재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442. 감사범위의 제한

(1) 감사실시의 시기 또는 기간의 부적정, 회계기록의 부실 또는 경영자의 요구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 재무확인서 또는 변호사조회서 등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감사 범위의 제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타의 감사절차를 통하여 감사의견 형성에 충분한 감사증거를 수집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감사범위의 제한으로 인한 감사의견의 구분은 동 제한으로 인하여 실시하지 아니한 감사절차의 성격이나 금액의 크기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경영자의 요구에 의하여 감사범위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의견거절을 표명한다.

(3) 감사범위의 제한으로 인하여 한정 의견 또는 의견거절을 표명하는 경우에 감사인은 감사보고서 중간문단에 감사범위가 제한되었기 때문에 감사의견을 표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술하고 감사범위문단에서도 이를 언급하여야 한다.

3.3. 企業會計基準의 違背

기업회계기준의 위배 : 감사인은 재무제표가 기업회계기준에 위배되어 작성됨으로써 정보 이용자를 오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을 때, 그 중요도에 따라 한정 의견이나 부적정 의견을 표명하게 된다.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에서 예외사항을 두고 있지 않는 한 손익 계산서, 대차대조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및 재무상태변동표를 포함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주기와 주석도 모두 감사대상으로 포함된다.

기업회계기준의 위배사항이 존재하는지의 여부는 회계처리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공시방법의 적정성 및 계속성의 준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물론 감사인은 재무제표가 기업회계기준에 위배되어 작성되어 있는 사실을 발견하면, 일차적으로 경영자에게 이를 수정하도록 권고하여야 하며, 만약 경영자가 이에 대한 수정을 거부할 경우에 한하여 그 오류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고려하여 이에 상응하는 한정 의견 혹은 부적정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한편, 미국의 경우에는 계속성의 위반(departures from consistency)에 대하여 회계기준에 일치하는 회계원칙의 변경이라 할지라도 이에 관계없이 적정 의견 이외의 의견 표명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데 비하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계속성의 문제를 기업회계 기준의 일부로 보아서(즉, 계속성의 원칙으로부터 이탈되었다 하더라도) 이에 따른 회계처리방법이 기업회계기준을 위배하지 않았을 때에는 적정 의견을 표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신에 이러한 회계변경은 참고목적으로 감사보고서의 별도문단에 특기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계속성 위배 여부를 별도의 판단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지 않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경우에 예외적으로 2개년의 비교재무제표에 관한 의견을 표명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미국과는 달리 원칙적으로 당해 회계감사년도에 한하여 감사의견을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계속성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된다.

회계처리방법과 재무제표표시방법이 기업회계기준에 위배되는 경우를 회계감사기준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재무제표작성에 계속 적용되는 회계처리방법 또는 당기에 처음으로 적용되는 회계처리방법이 기업회계기준에 위배되는 경우

② 기업회계기준에 일치되는 회계처리방법에서 기업회계기준에 위배되는 방법으로 변경한 경우

③ 기업회계기준에 일치되는 회계처리방법에서 기업회계기준에 일치되는 다른 방법으로 변경하였으나 그 변경의 사유가 정당하지 아니한 경우

④ 회계처리방법의 변경이 기업회계기준에 일치하고 그 변경사유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나 그 변경된 회계처리방법을 과년도로 소급적용한 경우

⑤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및 재무상태 변동표 중 어느 하나라도 감사에서 제외되어 있는 경우

⑥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주기 및 주석사항 중 재무제표에 표시되지 아니한 것이 있는 경우
현행 준칙에는 다음과 같이 명기되어 있다.

443. 기업회계기준의 위배

감사범위의 제한없이 충분한 감사증거를 수집한 결과 회사의 회계처리방법, 회계변경 또는 재무제표 표시방법이 기업회계기준에 위배되어 한정 의견 또는 부적정 의견을 표명하는 경우에 감사인은 감사보고서 중간문단에 그 사유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기술하고 의견문단에서 이를 언급하여야 한다.

3.4. 不確實性

불확실성(uncertainties) : 의뢰회사에 특정사건 혹은 거래와 관련하여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그 불확실성이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을 조건으로 하여”(subject to)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한정 의견을 표명하거나 그 내용이 아주 중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의견거절을 표명하여야 한다.

회계추정은 크게 합리적 추정이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로 분류되는데 후자만이 불확실성에 따른 적정 의견 이외의 판단대상이 된다. 회계감사보고준칙 351에 의하면 회사의 역사적 자료를 포함한 여러 가지 감사증거로써 합리적으로 추정이 가능한 경우의 예로서 감가상가자산의 내용년수의 추정, 매출채권의 회수가능성, 재고자산의 합리적인 처분가능가액, 제품과 관련된 보증채무의 추정 등을 들고 있다. 이들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추정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경영자의 판단의 오류나 불성실 등에 의하여 감사인의 추정액과 차이가 발생한 것이므로 회계추정의 불확실성에 따른 적정 의견 이외 의견의 판단대상이 되지 않는다.

회계추정의 불확실성에 대한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서 합리적으로 추정이 불가능한

경우를 자세히 살펴보자. 이는 다시 특정 사항과 관련된 불확실성과 복합적인 불확실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이연비용의 회수가능성(recoverability of deferred cost), 세무분쟁, 소송 등과 같이 비교적 용이하게 식별이 될 수 있는 특정사항에 관련된 불확실성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자. 감사인은 경영자의 추정에 대한 합리적 증거를 수집해야 하고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러한 불확실한 문제들에 대해서 조건부(subject to) 한정의견을 표명하거나, 불확실성이 매우 중대하여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거절을 표명해야 한다. 예를 들어, 소송이나 세무분쟁의 경우에는 그 결과가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치지만 외부의 결정변수에 따라 확정되므로 경영자나 감사인이 사전에 이를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미리 알려진 정보 등을 분석함으로써 상당히 합리적으로 그 최종결과를 예측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세무분쟁과 같은 많은 불확실 사항들이 존재하고 있다.”라고만 표시하는 것은 경영자 혹은 감사인 스스로가 판단하여야 할 책임을 회피하는 결과가 되므로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다. 한편 상황에 따라서는 합리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결론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비록 불확실성의 문제가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중요할 경우 그러한 사실을 감사보고서의 중간문단에 언급해야 하며⁽⁴⁾, 아울러 한정 의견이나 극히 예외적이기는 하지만 때로는 의견거절을 표명하여야 한다.

한편, 합리적 추정이 불가능한 경우의 두번째 유형인 복합적인 불확실성의 예로서는 반복적인 영업손실, 운영자금의 격심한 부족, 계속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금융지원의 두절, 차입금의 약정사항불이행, 산업 또는 경기침체에 따른 영향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의 불확실성은 매우 개연적인 사항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인이 해당증거를 수집한다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결과를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없지만 중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할 때에는 재무제표가 불확실성의 결과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감사의견을 한정하여야 한다.

우리 나라의 회계감사보고준칙 354에서는, 감사인이 재무제표에 대하여 의견을 형성할 때 경영자가 예측할 수 없는 장래의 불확실성의 결과를 예측하는 것까지 포함되지는 않는다고 규정하여 가능한 감사인의 책임을 경감시키려 하고 있는 점이 특이하게 보인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에는 오히려 이러한 복합적인 불확실성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을 강화시키고 있는 추세이다. 복합적인 불확실성의 대표적 유형이라 할 수 있는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여부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서는 SAS No. 34에서 비교적 상세히 다루고 있다. 감사인은 재무

(4) Ibid., pp.1024-1025.

제표에 대한 의견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계속기업의 가정(going concern assumption)에 위배되거나 의문이 가는 사항이 있는 지를 반드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여부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결손금의 누적이나 운전자금의 부족
- 채무에 대한 상환의 불이행이나 약정사항의 위반
- 주요 거래처의 상실이나 법규위반 등으로 인한 영업정지처분
- 핵심 경영자의 이탈이나 심각한 노사관계 등

첫번째와 두번째는 기업의 재무적 취약성과 관련한 파산위험을 나타내는 정보라 할 수 있고, 세번째와 네번째는 업무적 측면에서의 기업외적 및 기업내적 파산위험을 나타내는 정보라 할 수 있다. 감사인은 이러한 불확실성이 여러 면에서 복합적으로 존재하고 이에 따른 기업의 파산위험이 극히 높다고 판단될 때에는 의견거절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현행 준칙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460. 불확실성 존재시의 감사의견

461. 불확실성이 내포된 사항

(1) 불확실성이 내포된 사항이란 미래에 확정되거나 해결될 것으로 기대되어 감사보고서 일까지 최종 결과를 명확히 알 수 없는 사항을 말하며, 합리적인 추정이 가능한 사항과 합리적인 추정이 불가능한 사항으로 구분된다.

(2) 감사인은 불확실성이 내포된 사항으로 인한 손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경영자의 평가를 검토하고 경영자가 이를 재무제표에 적절히 반영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462. 불확실성과 감사범위의 제한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불확실성이 내포된 사항의 성격 및 재무제표에의 표시나 공시에 관한 경영자의 주장을 검증할 만한 충분한 감사증거가 있다고 판단되나, 경영자의 거부 등에 의하여 충분한 증거를 수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사범위의 제한으로 본다.

463. 불확실성과 기업회계기준의 위배

불확실성이 내포된 사항과 관련하여 다음의 경우는 기업회계기준의 위배로 본다.

① 합리적인 추정이 불가능한 불확실성이 내포된 사항에 대하여 적절한 주거나 주석표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② 합리적인 추정이 가능한 불확실성의 결과에 대하여 경영자가 이를 부적절하게 회계처리한 경우

③ 불확실성으로 인한 손실에 대한 경영자의 추정이 감사인의 추정과 다른 경우

464. 불확실성과 특기사항

다음 사항은 감사의견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감사보고서에 특기사항으로 기술한다.

- ①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중요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나 금액에 대한 합리적인 추정이 불가능하여 경영자가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적절히 공시한 경우
- ②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여부에 의문이 있는 경우

4. 限定・不適正・意見拒絶의 相互比較

한정의견이 표명되느냐 혹은 의견거절・부적정의견이 표명되느냐는 기본적으로 중요성의 정도(degree of materiality)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요성의 정도가 미미한 경우에는 적정의견 이외 의견의 표명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적정의견을 표명하게 된다. 단, 독립성이 결여된 경우에 한해서는 중요성의 정도와 관계없이 항상 의견거절을 하게 된다. 만약 예외사항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나 재무제표 전체적인 입장(taken as a whole)에서 볼 때 이러한 예외사항을 제외하면 재무제표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한정의견을 표명하게 된다. 그러나 적정의견 이외 의견의 표명사유가 아주 중대(highly material)하여 재무제표 자체로서의 존재의의가 의문시 되거나 특정사실이 수정 혹은 확인되지 아니하면 재무제표에 기초한 대부분의 의사결정이 오도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적정의견이나 의견거절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게 된다. 이 때 부적정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사유로는 기업회계기준에 위배하였을 때만 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표 2> 각 의견의 비교

조건(condition)	중요성의 정도(degree of materiality)		
	낮 음	보 통	높 음
기업회계 기준의 위배	적정의견	한정의견(~을 제외하고)	부적정의견
감사범위의 제한	적정의견	한정의견(~을 제외하고)	의견거절
불확실성의 존재	적정의견	한정의견(~을 조건으로 하여)	의견거절
독립성의 결여	의견거절	의견거절	의견거절

한편, 의견거절과 부적정의견의 중요한 차이는 감사인이 어떠한 사실에 대해 확실한 지식 즉, 확신을 갖고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말하자면 의견거절은 감사범위의 제한이나 불확실성으로 인해 감사절차를 수행하지 못했거나 혹은 감사증거를 수집하지 못하여 재무제표가 기업회계기준에 준거하여 적정하게 작성되었는가에 대한 확신을 얻을 수 없을 때 표명하는 의견인데 반하여, 부적정의견은 필요한 감사절차를 수행하고 감사증거를 충분히 수집한 결과로 명확히 재무제표가 기업회계기준에 위배되었다는 확신을 얻었을 때 표명되는 의견이다. 따라서 감사인은 피감사의 재무제표가 분명히 기업회계기준에 위배되었다는 사

실을 알고 있어 부적정의견을 표명해야 하는 상황에서 고의적으로 의견거절보고서를 작성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이다. <표 2>에서 보듯이 의견거절은 감사범위가 제한되거나,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경우, 또는 독립성이 견여되는 경우에 국한해서 감사인이 표명하는 의견이다.

4.1. 부적정의견과 의견거절과의 비교

재무제표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예외사항(exception)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만일, 예외사항이 너무 커서 재무제표가 쓸모없게 된다면 부적정의견이 요구된다. 그 반면에 만약 너무나 불확실해서, 의견표명이 소용이 없다면 의견거절이 요구될 것이다. 그러한 것들의 차이는 아래 문단에서 예시되는 바와 같이 아주 분명하다.

아래에 제시된 표는 “조건부 한정”(subject to) “예외사항 한정”(except for), “의견거절”(disclaimer) 및 “부적정”(adverse)이라는 각 의견들간의 차이를 명백히 해준다.

중요성의 정도 또는 영향력	불확실성에 관한 사항들 (의견에 영향을 미침)	불일치에 관한 사항들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침)
적 ↓ 큼	“조건부한정 의견” ↓ “의견거절”	“예외사항한정의견” ↓ “부적정의견”

미해결된 불확실성은 반드시 의뢰인과 감사인 간의 의견불일치를 의미하지는 않지만 감사의견이 주는 신뢰성의 정도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불확실성을 조건으로 하는 한정의견보고서가 요구되거나, 가끔 불확실성의 중대성에 따라 의견거절이 요구되기도 한다. 반면에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기업회계원칙으로부터의 이탈은 재무제표의 질에 관한 의견불일치의 유형으로 “예외사항한정의견”이나 혹은 필요하다면 “부적정의견”이 요구된다.

4.2. 한정의견과 부적정의견 또는 의견거절과의 비교

SAS No. 1 문단 513.02에는 다음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

“부적정의견은 예외사항이 너무 중대해서 독립감사인의 판단에 비추어 한정의견이 정당화될 수 없는 경우에 요구된다.”

제 2장에서 상세히 논의했던 중요성 개념은 한정의견, 부적정의견 또는 의견거절과의 비교 문제가 야기되기 이전에도 분명히 제기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면 “매우 중요하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회계전문기구의 공식문헌에도, 이에 관하여는 중요성의 정의에 대한 것과 마찬가지로 명확한 언급이 없다.

문제점들이 “매우 중요”해서 한정의견보다는 부적정의견이나 의견거절을 해야할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감사인은 최소한 다음 원칙을 고려해야만 한다.

- ① 문제점이 내포된 재무제표의 유용성
- ② 문제점을 이해할 수 있는 이용자 및 감사인 자신의 능력에 대한 감사인의 판단
- ③ 문제점의 잠재적인 영향을 측정할 수 있는 감사인의 능력
- ④ 재무제표에 대한 유보사항을 명료하게 기술할 수 있는 감사인의 능력
- ⑤ 문제점을 다루는 데 있어서 감사인의 의견과 의뢰인의 의견이 불일치한 정도

(1) 재무제표의 유용성 (Usefulness of the Financial Statements)

예외사항, 감사되지 않은 사항, 또는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까지 재무제표의 유용성을 손상시킨다. 만일 그 손상이 오직 부분적이라면, 한정 의견은 받아들일 만하다. 만일 그 손상이 너무 크거나 심각해서 이용자가 재무제표의 분석을 통해 의미있는 결론을 도출해내기가 어렵다면, 의견거절이나 부정적 의견이 제시되어야 한다. 어떤 단일항목에 대한 왜곡표시나 불확실성—예를 들면, 대차대조표상의 이연법인세—이 아주 클 수도 있으나 이는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일부 계정에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한정 의견의 범위내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재고자산에 대한 중요한 왜곡표시나 불확실성은 총자산, 유동비율, 매출총이익, 법인세, 당기순이익과 순자산 등에 영향을 미치므로 의견거절이나 부정적 의견을 표명해야 할 정도로 중대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2) 문제를 이해하는 능력 (Ability to Understand the Problem)

만일 문제가 평범하거나 또는 어떤 이유로 쉽게 이해될 수 있다면, 감사인은 동일한 중요성을 지니는 세롭거나 독특한 문제의 경우에서 보다 더욱 한정 의견을 표명하기 쉽게 된다. 만일 문제가 쉽게 이해될 수 있다면 감사인은 이용자들이 한정사항을 잘 이해하고 적절히 평가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벤처캐피탈형 투자신탁회사의 투자자산에 대한 실현가치총액은 보통 중요한 불확실성이 개재되어 있지만 희귀한 것은 아니다. 반면에 이전에 시도된 바 없는 새로운 고도의 기술상품에 대한 중요한 투자의 회수가 가능성은 특정회사의 고유한 문제로서 이해하기가 더욱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더구나 문제가 평범하다면 감사인과 이용자가 예상되는 결과를 평가하는 능력은 더욱 커지게 된다. 앞의 예는 그 점을 잘 나타내 준다. 또 다른 예는 제품보증책임이나 환경보호 등에 관한 최초의 소송사건에 비해 볼 때 많은 전례를 가지고 있는 법인세소송을 들 수 있다.

(3) 잠재적인 영향의 측정능력 (Ability To Measure the Potential Impact)

만일 감사인의 불확실성이나 불일치가 재무제표에 미치게 되는 영향에 대한 최악의 한계를 합리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면, 감사인은 한정 의견을 표명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 다소의 근거를 갖게 된다(실제적인 최악의 한계로서, 예컨대 많은 소송사건에서 분명히 타당성

이 없는 금액을 청구하는 경우이다). 만일 감사인이 잠재적인 영향의 최대한계를 측정할 수 없다면 감사인은 그 사항이 너무 심각하거나 중요하다고 가정하여야 하기 때문에 부적정의견이나 의견거절을 제시하게 된다.

(4) 결점을 기술하는 감사인의 능력(The Auditor's Ability To Describe the Defects)

만일, 관련 문제를 정확히 집어내어 계량화할 수 있고 또 그 문제의 모든 결과를 추정하여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이나 감사보고서에 기술할 수 있다면, 한정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타당하다.

(5) 의뢰인과 감사인의 의견불일치의 정도(Extent of an Auditor's Disagreement With a Client's Decision)

만일 관련문제가 의뢰인에 의한 추가조사나 재무제표의 표시 개선을 통해 의뢰인 스스로 수정할 수 있는 문제라면, 감사인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의뢰인의 통제범위밖의 사항들이나 근본적인 의견차이가 있는 사항들의 경우보다는, 좁은 허용한도를 견지해야만 한다. SAS No. 2의 문단 21을 보면 “조건부 한정의견”을 표명하는 근거로 평가를 태만히 하는 경우는 받아 들일 수 없고, 오직 합리적인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받아 들일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만일 어떤 불확실성이 일정기간동안 계속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분명한 사업상의 이유도 없이 그 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면, 감사인은 반드시 그 결과에 대하여 더욱 비판적인 견해를 취해야만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만일 어떤 문제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기업회계원칙에 명백히 위배되었거나, 또는 불확실성이 적절한 노력만 하면 분명히 해결될 수 있는 경우라면, “매우 정당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감사인의 판단은 의견의 차이나 실수 또는 판단의 여지가 있는 경우보다도 더욱 엄격하게 행해져야만 한다.

가끔, “예외사항” 한정과 “조건부”한정 간의 택일에 관련된 판단은 그 선택의 기초로서 법인세법규정의 해석에 대한 논쟁은 보통 있는 일이다. 만일 관련된 금액이 중요하다면, 장래에 법원판결에 의하여서 만이 해결될 수 있는 불확실성이라는 이유로 조건부한정의견을 표명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세금문제를 평가하고 그에 대한 판단을 내린 다음 의뢰인에게 동의하지 않는다면 “예외사항” 한정의견을 표명해야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라는 것을 쉽게 알게 된다.

5. 監査報告上에 나타난 監査意見의 現況과 分析

5.1. 分析對象企業의 選定과 關聯資料

監査報告上 財務諸表의 表示와 監査意見의 구분에 있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불확

실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적정의견 이외에 대부분이 한정의견이며 이 중에서 다른 것에 비하여 판단의 가능성이 가장 크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나라 기업의 실제자료를 입수하여 불확실성이 감사보고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의 실태를 분석하기로 한다.

이상의 목적을 위하여 이 논문 작성시점의 자료의 입수 가능성을 고려하여 가장 가까운 시점으로서의 결산일인 1989. 12. 31과 1990. 5. 31의 상장법인, 등록법인, 기타 외감법 대상법인에 대해 적정의견 이외에 조건부 한정의견을 받은 31개 기업과 의견거절의 감사의견을 받은 9개 기업을 대상으로 자료를 분석하였다.

증권감독원 자료에 의하면 1991. 2. 28 현재 상장법인은 668개사, 등록법인은 143개사, 외감법대상법인은 4,972개사이다. 여기서 상장법인과 등록법인은 각각 다른 것이나, 외감법대상법인에는 상장법인과 등록법인이 포함되고 기타 비상장, 비등록의 법인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외감법대상법인은 가장 광범위한 법인개념이므로, 상장법인과 등록법인이 아닌 외감법대상법인은 기타 외감법대상법인이라고 하기로 한다. 외감법대상법인은 1989년도에는 총자산 30억원 이상의 기업이었으나, 1991년도에는 40억원 이상의 기업이다. 상장법인은 증권거래소에 주식, 사채가 상장된 회사이고, 등록법인은 주식발행, 사채발행, 기업공개를 위하여 증권감독원에 등록하는 회사이며, 외감법대상법인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는 회사이다. 이상의 자료는 1991년의 자료이어서 본 논문의 분석 대상기업의 결산일과 시차가 있으나 분석상의 흐름에 큰 문제가 없으므로 그대로 이용하기로 한다.

증권감독원 감리국에서 공표한 1990년도 업무실적통계자료에 의하여 본 논문의 분석대상기업에 관련된 자료가 <표 3, 4, 5>에 있다.

<표 3>은 1989년도 외부감사대상법인의 감사의견현황을 나타낸 것으로, 대부분의 회사인 80.5%가 적정의견을 받고 있고 한정의견은 18.7%로, 부적정의견과 의견거절을 합쳐서 1%가 되지 못하고 있음을 표시하고 있다. 이로써 우리나라 기업의 회계수준이 높다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으나 과연 그런 것일까라는 의문이 생긴다. 회계감사기준이 엄격하게 적

<표 3> 1989년도 외부감사대상법인의 감사의견 현황

감 사 의 견		전 체 회 사 수	비 율	12월 상장 회사수
적	정	3,853개	80.5%	461
한	정	894	18.7	26
부	적	15	0.3	—
의	견 거 절	25	0.5	2
계		4,787개	100%	489

〈표 4〉 1989년도 한정 의견을 받은 회사의 한정내용과 회사수

한정 사유	회사 수	비율
기업회계기준 위배	831개 (20개)	92.9% (76.9%)
불확실성	41 (6)	4.6 (23.1)
감사범위의 제한	22 (0)	2.5 (0)
계	894개 (26개)	100.0% (100%)

* 괄호안은 상장법인

용 또는 운영되지 않았거나, 회계감사인이 지나치게 관대하였던가, 아니면 회계감사인의 질적 수준에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의심된다. 더군다나 이들 회사가 모두 회계실무의 수준이 높은 상장법인이라면 수긍할 수도 있으나 수준이 낮은 등록법인, 기타 의감법대상법인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믿기 어려운 것이다.

〈표 4〉는 1989년도에 한정 의견을 받은 894개사의 한정내용을 분류한 것으로, 불확실성과 관련하여 한정 의견을 받은 회사는 41개사로 4.6%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한정 의견을 받은 회사는 기업회계기준의 위배로 인한 것이었다. 이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불확실성이 감사의 견에 미치는 경향이 적었고, 경우에 따라서는 회계감사인이 불확실성의 문제를 소홀히 다루었다는 의문도 있다.

1989년의 자료를 분석함에 있어서는 몇가지 의심이 제기될 수 있어 1990년의 자료분석에 있어서는 회계실무의 질적 수준이 높다고 생각되어지는 상장법인의 경우에 국한하여 분석해 보았다. 적정의견 이외의 감사의견을 받은 31개의 기업중 상장폐지된 1개사와 자료불명의 2개사를 제외한 28개사를 대상으로, 이 중 그 대다수를 차지하는 한정 의견의 기업을 중심으로 분석해 보았다.

〈표 5〉는 1990년도 상장기업의 감사의견 현황을 나타낸 것으로, 전체 외부감사대상법인과 비교해서 적정의견이 더욱 지배적이며 〈표 6〉을 아울러 보게 될 때 그 한정 의견의 대다수가 기업회계기준의 위배임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상장기업의 경우 불확실성으로 인한 한정 의견의 비율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표 5〉 1990년도 상장법인의 감사의견 현황

감사 의견	회사 수	비율 (%)
적정	473	93.8
한정	28	5.6
부적정	1	0.2
의견거절	2	0.4
계	*504	100.0

〈표 6〉 1990년도 한정 의견을 받은 회사의 한정내용과 회사수

한정 사유	회사 수	비율 (%)
기업회계기준 위배	21	61.8
불확실성	11	32.3
감사범위 제한	2	5.9
계	*34	100.0

* 한개의 회사에 2개 이상의 사항이 있을 수 있어 총 34개 회사가 됨

5.2. 관련자료에 대한 분석

감사의견의 구분에 있어서 적정의견 이외의 대부분이 한정 의견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한정 의견의 가장 큰 이유는 기업회계기준을 위반한 경우라는 것도 또한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기업회계기준의 위반이나 감사범위의 제한 등은 비교적 객관적으로 구별 가능한 사항이라 감사 의견의 분류 기준에 있어 특히 중점적으로 보아야 할 것은 불확실성과 관련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불확실성이 기업의 재무제표나 감사 의견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알기 위하여 1989. 12. 31과 1990. 5. 31이 결산일로 불확실성과 관련하여 한정 의견과 의견 거절을 받은 회사에 대해 증권감독원에 비치된 자료를 입수하여 분석하기로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불확실성이 감사 의견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가를 알 수 있게 되고, 이 분석을 기초로 현행의 기업 실무와 감사 실무를 개선하는 개선책을 도출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부록 1의 31개 회사가 분석 대상의 회사로, 이를 분류하면 〈표 7〉과 같다. 이 표에서 분석 대상 회사의 절반 정도인 15개 회사(48.4%)가 기타외감법대상법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기타외감법대상법인은 외감법대상법인이지만 상장법인이나 등록법인이 아닌 회사이다. 일반적으로 이 법인은 상장법인, 등록법인에 비하여 회계실무의 수준이 낮은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그리고 등록법인은 기타외감법대상법인보다 회계수준이 높으나 상장법인보다 낮은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로써 불확실성의 한정 의견을 받은 회사의 상당수인 25개 회사(80.6%)가 회계실무의 수준이 낮은 회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7〉 불확실성과 관련하여 한정 의견을 받은 회사

	회사 수	비율
상장법인	6계	19.4%
등록법인	10	32.3
기타외감법대상법인	15	48.4
계	31	100.0%

이와같은 이유로 1990. 12. 31이 결산일로 적정의견이외의 한정의견 등을 받은 회사에 대하여 분석을 함에 있어서 이번에는 증권감독원에 비치된 자료중 비교적 회계의 실무수준이 높다고 생각되어지는 상장기업의 자료를 참고로 추가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이에 관해서는 부록 2에 별도로 31개의 회사에 관한 자료를 첨부했다.

다음은 불확실성으로 한정의견을 받은 회사의 감사보고서상의 한정내용과 재무제표 주석에 표시된 우발채무의 내용을 분석한 것이다.

먼저 <표 8>에서부터 <표 12>까지는 1989년의 자료에 대한 분석이다.

<표 8>은 분석대상회사의 한정내용을 분류한 것이다. 이 표에서 우발채무의 사유에 속하는 계류중의 소송이 있는 회사는 11개회사(30.6%)이고, 지급보증, 공사이행보증이 있는 회사는 비교적 적은 수이며, 우발자산에 해당하는 매출채권, 미수금의 회수불가능이 있는 회사가 비교적 많으며, 계속기업 문제가 있는 회사가 14개사(38.9%)로 많은 수의 회사가 이 문제로 한정의견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9>는 분석대상회사의 재무제표주석에 기재된 우발채무와 우발자산을 요약한 것으로, 이들은 한정의견에 특기사항으로 기재된 것이 아니다. 이들 내용 중 계류중의 소송과 지급보증이 각각 25.0%로 가장 많은데, 지급보증에 대해 받을어음의 할인과 배서양도, 백지어음과 수표를 합치면 24개사(60.0%)로 가장 많은 수가 되어 한정의견을 받은 회사 중 절반이상이 지급보증에 관련한 우발채무를 표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급보증 관련 우발채무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에 존재하고 감사의견의 구분(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의 감사의견)에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상당수의 회사가 우발채무를 전혀 표시하지 않고 있고, 우발채무가 있어도 공시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그밖에 우발자산이 주석에 기재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기업회계기준에서 우발자산을 규정하지 않고 있고 회계감사인의 우발자산에 대한 인식도 낮기 때문이다.

다음에는 분석대상회사의 총자산규모, 자기자본규모, 당기순손익 규모를 분석한 것이다.

<표 8> 불확실성으로 한정의견을 받은 회사의 한정내용의 분류

	회 사 수	비 율
계류중의 소송(법인세 분쟁 등)	11개	30.6%
지급보증	1	2.8
공사이행보증, 추가공사손실	3	8.3
매출채권, 미수금의 회수불가능	7	19.4
계속기업(정리기업, 산업합리화대상, 누적적자 등)	14	38.9
계	36개	100.0

* 1개 회사에 2개 이상의 사항이 있어 총 36개 회사가 됨

〈표 9〉 불확실성으로 한정의견을 받은 회사의 우발채무

	회 사 수	비 율
제류중의 소송	10개	25.0%
지급보증	10	25.0
받을어음의 할인, 배서양도	5	12.5
백지어음, 백지수표	1	2.5
제품, 상품의 판매보증	1	2.5
공사이행보증, 추가공사손실	3	2.5
퇴직금	1	2.5
손해배상청구	40	100.0
계	40개	100.0

* 1개 회사에 2개 이상의 사항이 있을 수 있어 총 40개 회사가 됨.

이들 자료를 분석하는 이유는 불확실성으로 한정의견을 받은 회사가 어떤 규모의 회사로 구성되어 있고, 또 한정내용과 우발채무, 우발자산이 이들 규모에 비추어 어떤 중요성이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표 10〉에 의하면 총자산규모는 100억원 미만의 회사가 11개 회사(36.7%), 1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인 회사가 10개 회사(33.3%), 합계 21개 회사(70.0%)가 되어, 분석대상회사의 상당수가 소규모회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총자산이 16,856억원인 대우조선이 거대기업으로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눈에 띈다. 대우조선의 경우 당시에 노사분쟁, 조선업계의 불황으로 계속기업의 문제가 심각하였었다.

〈표 11〉에서는 분석대상회사의 자기자본규모에 따른 분류로 31개 회사 중 11개 회사(36.7%)가 자기자본이 부(-)인 자본잠식의 회사라는 놀랄만한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이 사실은 자본잠식이 엄청나서 심지어 이익잉여금, 자본잉여금, 자본금까지도 모두 소모되고 부채만의 자산으로 구성된 회사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이 부채가 과다해지면 적자기업

〈표 10〉 불확실성으로 한정의견을 받은 회사의 총자산 규모에 따른 분류

총 자 산 규 모	회 사 수	비 율
100억원 미만	11개	36.7%
1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10	33.3
5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1	3.3
1,000억원 이상~ 5,000억원 미만	3	10.0
5,000억원 이상~10,000억원 미만	4	13.4
16,856억원인 회사(대우조선)	1	3.3
계	30개	100.0

* 1개 회사의 자료는 불명임

으로서 기업은 도산으로 치닫게 되고 당장 도산이 되지 않더라도 원금상환, 이자지급의 압력으로 재무구조가 정상화 되기는 매우 어렵게 된다. 여기서 적어도 자기자본규모가 부(-)인 회사(특히 부(-)의 금액비중이 큰 회사)에 대해서는 비록 계속 기업으로 남아 있을 것으로 확실하거나 다른 수단(예, 정부의 자금지원)에 의해 기업존속이 보장된다 하더라도 의견거절이 표명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자본잠식의 정도가 극심한 회사로 진흥기업(1,234억원)과 범양상선(31,197억원)이 있다. 그 밖에 <표 10>에서 자기자본이 양(+)인 회사이지만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7개 회사(23.3%)로, 이에 대해 자기자본이 부(-)인 회사를 합치면 분석대상기업의 대부분이 자기자본규모가 극히 적은 규모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표 12>는 분석대상회사의 당기순이익규모에 따른 분류에 관한 것으로, 분석대상회사의 절반이상인 16개 회사(55.2%)가 적자기업으로서 당기순손실의 기업이다. 이들 회사의 당기순손실은 비교적 거액인데, 특히 대우조선의 당기순손실은 2,390억원으로 규모가 크다. 순이익을 표시하고 있는 회사의 당기순이익은 대부분 5억원 미만으로 11개 회사(37.8%)가 5억원 미만을 표시하고 있다. 이로써 분석대상기업의 당기순이익은 매우 낮은 수준에 있고 순손실도 많이 발생하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표 11> 불확실성으로 한정의견을 받은 회사의 자기자본 규모에 따른 분류

자 기 자 본 규 모	회 사 수	비 율
자기자본이 (-)인 회사		
10억원 미만	—	—
10억원 이상~50억원 미만	6개	20.0%
5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	—	—
100억원 이상~200억원 미만	1	3.4
200억원 이상~500억원 미만	2	6.7
1,234억원인 회사(진흥기업)	1	3.3
31,197억원인 회사(범양상선)	1	3.3
소 계	11	36.7
자기자본이 (+)인 회사 :		
10억원 미만	7	23.3
10억원 이상~50억원 미만	4	13.3
5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	2	6.7
100억원 이상~200억원 미만	3	10.0
200억원 이상~500억원 미만	2	6.7
3,239억원인 회사(대우조선)	1	3.3
소 계	19	63.3
계	30개	100.0%

* 1개 회사의 자료는 불명임

〈표 12〉 불확실성으로 한정 의견을 받은 회사의 당기순손익의 규모에 따른 분류

당기순손익 규모	회 사 수	비 율
당기순손실 :		
5억원 미만	1개	3.5%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	3.5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5	17.2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3	10.3
5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	2	6.9
100억원 이상~200억원 미만	1	3.5
200억원 이상 (대우조선 2,390억원)	3	10.3
소 계	11	36.7
당기순이익 :		
5억원 미만	11	37.8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1	3.5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
5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	—	—
121억원인 회사(범양상선)	1	3.5
소 계	13	44.8
계	20개	100.0%

* 2개 회사의 자료는 불명임

이에 대하여 〈표 13〉은 1990. 12. 31일 결산일인 상장기업의 경우에 있어서 불확실성으로 한정 의견을 받은 회사의 한정내용을 분류한 것이다.

이 표에서는 매출채권·공사대금의 회수와 관련하여 우발자산을 가진 기업의 수가 가장 많았고 〈표 8〉과 비교하여 계속기업과 관련된 한정 의견이 없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표 14〉~〈표 16〉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앞의 〈표 8〉~〈표 12〉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표 13〉 불확실성으로 한정 의견을 받은 회사의 한정내용의 분류

	회 사 수	비 율
계류중의 소송(법인세 분쟁 등)	2개	30.6%
지급보증	2	2.8
공사이행보증, 추가공사손실	1	8.3
매출채권, 미수금의 회수불가능	7	19.4
계속기업(정리기업, 산업합리화대상, 누적적자 등)	—	38.9
계	*12개	100.0

* 불확실성과 관련하여 11개 기업이 한정 의견을 받았으나 (주)한양의 경우 2가지 항목과 관련하여 불확실성을 지님

<표 14>

총 자산 규모	회 사 수	비 율
1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6	21.4%
5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8	28.6
1,000억원 이상~ 5,000억원 미만	11	39.3
5,000억원 이상~10,000억원 미만	1	3.57
14,083억원인 회사 (주)한양	1	3.57
26,542억원인 회사(현대건설)	1	3.57
계	28개	100.0%

<표 15> 자기자본규모에 따른 분류

자 기 자 본 규 모	회 사 수	비 율
자기자본이 (-)인 회사 :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	—
10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2	7.14
2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	—
500억원 이상~1,000억원 미만	1	3.57
-1,442억(삼익주대)	1	3.57
-1,554억(진흥기업)	1	3.57
소 계	5	17.86
자기자본이 (+)인 회사 :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3	10.71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3	10.71
10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	32.14
2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9	21.43
500억원 이상~1,000억원 미만	6	3.57
1,421억원 (주)삼미	1	3.57
4,445억원 (현대건설)	1	3.3
소 계	23	82.14
계	28개	100.0

한정의견을 받은 상장기업 역시 총자산면이나 자기자본등의 규모면에서 전반적으로 규모가 작은 쪽에 포함됨을 알 수 있다.

<표 14>에서 적정의견 이외의 의견을 받은 상장회사의 총자산 규모는 500억원 미만이 6개 회사(21.4%), 500억원이상 1,000억원미만의 회사가 8개 회사(28.6%)로 합이 14개사(50%)에 이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전 상장기업의 평균과 비교해 볼 때 상당히 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89년 현재 총자산 규모면에서 8위를 차지하는 현

〈표 16〉 당기순손익 규모에 따른 분류

당기순손익 규모	회사 수	비율
당기순손실 :		
5억원 미만	—	3.5%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3.5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1	3.57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2	7.14
5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	2	7.14
100억원 이상~200억원 미만	—	—
200억원 이상	2	7.14
-217억원(삼익주택)	—	—
-315억원(진흥기업)	—	—
소 계	7	25%
당기순이익 :		
5억원미만	6	21.42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2	7.14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5	17.85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5	17.85
5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	2	7.14
100억원 이상~200억원 미만	1	3.57
소 계	21	75%
계	28	100%

대진설과 20위의 (주)한양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결프전으로 인하여 미수금의 회수가가능성에 관한 불확실성의 문제가 심각함을 알 수 있다.

〈표 15〉에서 분석대상의 자기자본규모에 따른 분류로 28개 회사중 5개 회사(17.86%)가 자기자본이 (-)인 자본잠식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자기자본규모가 (-)인 삼익주택이나 진흥기업의 경우에는 〈표 16〉의 당기순손익 면에서도 손실이 각각 (-)217억원과 (-)315억원을 보여주고 있는데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의견거절이 표명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표 16〉에서 역시 25% 이상이 순손실을 기록하고 있으며 당기순이익 10억원미만까지 합하면 거의 50% 이상이 매우 낮은 순이익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분석대상기업의 대부분의 순이익은 매우 낮은 수준에 있고 순손실도 많이 발생하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Ⅲ. 結論과 提案

(1) 우발채무, 우발자산의 공시와 계속기업의 문제가 감사보고서에 잘 표시되지 않거나 누락되는 수가 있어 회계감사기준에서 이의 공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기업에서는 우발채무와 계속기업문제의 공시를 회피하고자 하고 회계감사인도 감사인의 법적 책임에 직접 관련되지 않는 한 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감사의견에서 반영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분석대상기업의 실제자료에 의하면 외부감사대상법인의 전체수에 비하여 매우 적은 수의 회사가 우발채무와 계속기업문제로 한정 의견 또는 의견거절의 감사의견을 받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와같이 감사의견이 양호한 것은 믿기 어려운 것으로, 우발채무가 없었거나 계속기업 문제가 심각하지 않았기에 적정 의견이 되었거나 이들 문제의 비중이 비교적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정적으로 공표되었다고 추정될 수 있다. 그러나 우발채무의 존재를 은폐하고 계속기업문제를 가볍게 다루어 정보를 왜곡하고 정보이용자에게 손해를 줄 수 있어 회계감사기준에서 이의 공시와 감사의견에의 반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2) 불확실성으로 인한 한정 의견과 의견거절의 구분이 명백하지 않고 이에 관한 구별기준이 모호하다. 따라서 두 의견의 구별기준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또 의견거절로 판정되는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여 의견거절을 강화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불확실성으로 인한 사항이 중대하면 한정 의견으로, 매우 중대하면 의견거절로 공표된다. 그러나 본논문의 분석대상기업의 실제자료를 검토하면 한정 의견과 의견거절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의견거절이 될 수 있는 기업의 감사의견이 한정 의견으로 발표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감사의견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것은 중요성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고 또 구체적인 구별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회계감사인간에 제각기 다른 감사의견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구체적 기준의 제정이 필요하다.

기업에 막대한 자본잠식이 있을 경우 또는 정리절차가 개시된 경우 이를 이유로 한정 의견을 줄 것인가 아니면 의견거절을 줄 것인가가 분명하지 않다. 회계감사인에 따라 다른 의견이 나올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명쾌한 기준의 마련이 필요하다.

현재의 감사실무에서 의견거절의 표명에 대해 관대한 경향(부적정 의견의 경우도 비슷함)이 있어 양호한 감사의견이 많이 공표되는 경향이다. 이러한 경향이 계속되면 의견거절은 거의 사라지게 될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의견거절이 적다는 것이 우리나라 회계

실무와 감사실무의 수준이 높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므로, 회계자료의 신뢰도뿐 높이고 정보이용자를 오도하지 않으며 회계감사의 권위를 갖도록 하기 위하여 의견거절을 강화할 필요도 있다.

(3) 감사의견의 한정사항과 의견거절사항의 상당수가 계속기업의 문제와 관련되고 있어 계속기업문제에 대한 공시강화, 감사의견의 구분과 특기사항의 기재에 대해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분석대상기업의 실제자료에 의하면 계속기업의 문제를 갖고 있는 회사가 상당수이고, 이들 회사에 있어서 계속기업문제의 공시와 감사의견에의 반영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감사실무에서는 이 문제를 소홀히 다루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 소송사건이 빈번해질 경우 회계감사인인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계속기업문제의 공시와 감사의견에의 반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계속기업문제는 기업의 사황에 관련된 것이므로 엄격하게 다루고 감사의견도 보수주의적 관점에서 표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의견거절이 될 경우 기업의 불이익이 있고 기업의 도산을 재촉하는 것이 될 수도 있어 신중한 검토를 거쳐 판단기준이 마련될 필요도 있다.

(4) 불확실성으로 인한 우발채무, 계속기업의 문제 이외에 중대한 기업회계기준의 위배, 중대한 감사범위의 제한 등의 사항이 있어 두가지 이상의 중대한 지적사항이 있을 경우 감사의견은 지적사항에 대한 벌을 가중시켜 한정 의견보다는 의견거절을 표명하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

앞의 분석대상기업의 실제자료에서는 이러한 복수의 지적사항에 대해 한정 의견이 발표되기도 하고 의견거절이 발표되기도 하였다. 지적사항이 여러가지라고 해서 반드시 의견거절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복수의 지적사항의 전체적인 중요도를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 대해 회계감사기준에 규정이 없으므로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5) 우발채무와 우발자산의 재무제표 주석상의 공시, 감사의견상의 특기사항의 기재에 대한 표준양식이 마련되어야 한다.

분석대상기업의 실제자료에 의하면 우발채무에 관한 주석, 감사의견상의 특기사항이 여러가지 형태로 작성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내용이 불충분하게 기술되고 있다. 표준양식은 증권감독원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를 중심으로 마련하여 이를 회계감사인 모두가 따르도록 함으로써 보다 완전한 공시를 하고 감사실무의 통일을 기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상의 문제점 이외에도 마지막으로 다음의 문제점이 지적될 필요가 있다.

외감법 대상법인 중 의견거절을 받은 회사는 1989년도의 경우 겨우 0.52%(4,787개 회사 중 25개 회사)로 극히 적은 수의 회사만이 의견거절을 받았다. 이와 같이 의견거절을 받은 회사가 극소수인 것은 기업회계의 수준과 회계감사의 수준이 비교적 높은 미국의 경우와 비교하면 매우 좋은 감사의견을 받은 것이다. 여기서 우리나라의 외감법대상법인에는 상장법인 이외에도 기업회계의 수준이 낮은 등록법인, 비상장 및 비등록의 외감법대상법인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볼 때에 의견거절을 받은 회사의 비율이 미국보다 낮다는 것은 신뢰하기 어려운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에 비하여 기업회계와 회계감사의 질적 수준이 낮은 데도 불구하고 의견거절을 받은 회사의 수가 적다는 것은 불확실성으로 인한 우발채무와 계속기업의 문제에 있어서 좋은 감사의견을 받는 결과가 되어 기업회계와 회계감사의 질적 수준을 더욱 낮추는 것이 될 것이다. 이로써 기업회계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무부, 증권감독원등 감독기관의 규제가 강화되어야 하고, 회계감사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도 이들 감독기관의 규제강화는 물론이고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자율규제와 공인회계사의 엄격한 감사기준의 적용과 질적 수준향상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